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28 선고 2023나141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28 선고 2023나1411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6가합26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황귀빈, 황혜원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1. 2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6가합26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469,587,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C 주식회사에 20,027,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7.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 주식회사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C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595,916,302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7,023,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308,861,151원, 원고 C 주식회사에 16,996,0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2행 중 "1) 적재물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1) 적재물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하 '선행 적재물취거 등 소송'이라 한다)"로, 4쪽 표 아래 9행 중 "2)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2) 부당이득반환 소송(이하 '선행 부당이득반환 소송'이라 하고, 위 선행 적재물취거 등 소송과 통칭하여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9행 중 "2012. 2. 15."을 "2011. 2. 15."로, 1) 같은 쪽 17행 중 "구 V 24,606m²"를 "구 V 잡종지 24,606m²"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16행 중 "현 AG 잡종지 10,731m²로 분할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AG 잡종지 10,731m²로 분할되었다. 구 AG 잡종지 10,731m²는 2019. 8. 12. 현 AG 잡종지 9,386m², 현 BD 잡종지 1,345m²로 분할되었다.』

○ 제1심판결 7, 8쪽 중 "[표2]"의 순번 14, 16, 19번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4	구 ○	잡종지	21,599	1/5	2011. 1. 7.	2011. 2. 14.
현 ○	19,586	1/5(2012. 4. 23.부터)	2011. 2. 15.	2022. 8. 28.		
16	구 V	잡종지	49,524	1/5	2011. 1. 7.	2012. 3. 28.
구 V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V 잡종지 49,254m ² 에서	24,606	1/5	2012.	2012.		

14	구 ○	잡종지	21,599	1/5	2011. 1. 7.	2011. 2. 14.
2012. 3. 29. 현 AH 잡종지 523m ² , 구 Z 잡종지 21,060m ² , 현 AI 잡종지 3,065m ² 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3. 29.	4. 22.		
19	구 AG	잡종지	10,731	1	2018. 7. 6.	2019. 8. 11.
현 AG	9,386	1	2019. 8. 12.	2022. 8. 28.		
현 BD	1,345	1	2019. 8. 12.	2020. 1. 30.		

○ 제1심판결 11쪽 12행 중 "소멸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멸하였고, 원고 C이 원고 신탁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분할합의에 참여한 이상, 원고 C에게도 위 분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 제1심판결 12쪽 중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쪽 3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 약정은 공유물분할의 부수적 약정으로서 공유 토지 위에 피고, 주식회사 BA 등이 적치한 건설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유자들 각각이 공유지분과 같은 비율로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그 문언과 규정을 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장차 발생할 비용을 위 분할합의에서 정한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를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적치물에 관한 지배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 적치물에 대한 취거의무 등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이라거나 적치물의 존재 자체를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3)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원고 신탁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들[현 AE, 현 AH, 현 AI, 현 O, 구 P 잡종지 21,495m²(위 토지에서 분할된 구 AG 및 현 AG, 현 BD를 포함한다)] 지상의 적재물에 대한 취거의무 역시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들 중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쪽 4행 중 "다만,"을 "더하여"로, 같은 쪽 8, 9행 중 "채무까지도"를 "채무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4행, 21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22쪽 1행 및 그 이하의 각 "법원감정일"을 "제1심 법원감정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23쪽 16행, 29쪽 3행, 30쪽 14행, 38쪽 19행 중 각 "기각"을 "일부 인용"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17쪽 16행 중 "2010. 10. 18.을"을 "2018. 10. 18.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6행 중 "6,180원"을 "5,740원"으로, 같은 쪽 8행 중 "2,822,643원"을 "2,818,419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21쪽 6행 중 "5,740원,"부터 12행 중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740원이고, 현 AC의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8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4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7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현 AC은 구 L에서 현 L과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양 토지가 인접해있고 지목이 동일하며, 2011. 12. 31. ~ 2018. 12. 30.의 임료도 동일한바, 현 AC의 2011. 1. 7.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도 5,74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23쪽 5행 중 "5,740원,"부터 13행 중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740원이고, 현 AD의 2011. 12. 31. ~ 2012.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180원, 2012. 12. 31. ~ 2013.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40원, 2013. 12. 31. ~ 2014.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20원, 2014. 12. 31. ~ 2015.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280원, 2015. 12. 31. ~ 2016.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440원, 2016. 12. 31. ~ 2017.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74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92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나아가 현 AD은 구 L에서 현 L과 함께 분할된 토지로서 양 토지가 인접해있고 지목이 동일하며, 2011. 12. 31. ~ 2018. 12. 30.의 임료도 동일한바, 현 AD의 2011. 1. 7. ~ 2011. 12. 30.의 m²당 연 임료도 5,74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24쪽 1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E 지상 5,965㎡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E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AE 지상 5,965㎡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24쪽 7행, 25쪽 7행 중 각 "2012. 4. 22.까지"를 "2018. 10. 17.까지"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25쪽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E의 5,965㎡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E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6,7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78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E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56,341,506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29쪽 9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H 지상 523㎡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H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AH 지상 523㎡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29쪽 15행, 30쪽 11행 중 각 "2012. 4. 22.까지"를 "2018. 10. 17.까지"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30쪽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H의 523㎡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H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5,88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5,88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H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1,888,120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30쪽 20행부터 31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AI 지상 3,065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AI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AI 지상 3,065m²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31쪽 5행, 32쪽 1행 중 각 "2012. 4. 22.까지"를 "2018. 10. 17.까지"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32쪽 3행부터 3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AI의 3,065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AI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9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92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AI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81,991,857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3) 구 ○ 잡종지 72,166m²: 전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 잡종지 72,166m²의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과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 잡종지 72,166m² 중 43,880m²에 적재물을 적치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 잡종지 72,166m² 중 43,880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구 O의 2009. 12. 31. ~ 2010.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5,200원, 2010. 12. 31. ~ 2011.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5,4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O 잡종지 72,166 m^2 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46,544,057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이유 있다.

14) 구 O 잡종지 21,599 m^2 : 기각 및 현 O 잡종지 19,586 m^2 :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1. 2. 14.까지는 구 O 잡종지 21,599 m^2 의 1/5 지분을, 2011. 2. 15.부터 2012. 4. 22.까지는 현 O의 1/5 지분을, 2012. 4. 23.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O의 전체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구 O 잡종지 21,599 m^2 및 현 O의 5,450 m^2 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O 지상 5,450 m^2 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O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O 지상 5,450 m^2 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34쪽 2행, 35쪽 2행 중 각 "2012. 4. 22.까지"를 "2018. 10. 17.까지"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35쪽 5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O의 5,450 m^2 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O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m^2 당 연 임료는 6,6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64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O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139,893,885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36쪽 13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6) 구 V 잡종지 49,524m² 및 구 V 잡종지 24,606m²: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11. 1. 7.부터 2012. 3. 28.까지 구 V 잡종지 49,524m²의, 2012. 3. 29.부터 2012. 4. 22.까지 구 V 잡종지 24,606m²의 각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이하 구 V 잡종지 49,524m²와 구 V 잡종지 24,606m²를 구분 없이 '구 V'이라 한다).』

○ 제1심판결 37쪽 7행, 38쪽 9행 및 11행, 39쪽 16행, 40쪽 6행 및 8행 중 각 "현 AG", 37쪽 9행 중 "현 AE"를 모두 "구 AG"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9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 P 지상 2,948m²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현 P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는 피고가 현 P지상 2,948m²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38쪽 19행 중 "잡종지 21,495m²"를 "잡종지 21,495m²: 기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9쪽 13, 14행, 40쪽 13행 중 각 "2012. 4. 22.까지 구 P 잡종지 21,495m²의 3,288m²"를 "2018. 10. 17.까지 구 P 잡종지 21,495m²의 3,288m² 및 현 P 잡종지 10,764m²의 2,948m²"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40쪽 15행부터 41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22. 8. 28.까지 현 P의 2,948m²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현 P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m²당 연 임료는 6,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80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현 P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77,494,439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9) 구 AG 잡종지 10,731㎡ 및 현 AG 잡종지 9,386㎡, 현 BD 잡종지 1,345㎡: 일부 인용
가) 원고 신탁이 2018. 7. 6.부터 2019. 8. 11.까지는 구 AG의 전체 지분을, 2019. 8. 12.부터
2022. 8. 28.까지는 현 AG의 전체 지분을, 2019. 8. 12.부터 2020. 1. 30.까지는 현 BD의 전체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18. 7. 6.부터 2022. 8. 28.까지 구 AG(2019.8.12. 분할 이후 현 AG 및 현 BD)
지상 340㎡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AG의 지상 340㎡'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법원감정일 이후 피고가 구 AG에 적치해 두었던 적재물을
취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8. 10. 18.부터 2019. 8. 11.까지는
구 AG 지상 340㎡에, 2019. 8. 12.부터 2020. 1. 30.까지는 현 AG 및 현 BD의 지상 340㎡에
적재물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0. 1.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AG 및 현 BD의 340㎡를 점유하여 원고
신탁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AG는 2019. 8. 12. 현 AG 및 현
BD로 분할된 사실, 원고 신탁이 분할 이후 위 분할된 토지들의 전체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현
BD에 관하여 2020. 1. 30.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신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원고 신탁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 신탁은 현 BD에 관하여는
2020. 1. 31.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구 AG에 적재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40㎡가 분할된 위 토지들에 각각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원고 신탁이 소유권을 상실한 현 BD에 몰려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0. 1. 31.부터 2022. 8. 28.까지 현 AG의 34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 AG 및 현 BD에
관한 2020. 1. 31.부터 2022. 8. 28.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2018. 7. 6.부터 2018. 10. 17.까지 구 AG의 340㎡'를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구 AG 지상 340㎡에 피고의 적재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는 2018. 10. 18.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해당하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동일한 면적에 적재물을 적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신탁이 제출한 위성사진만으로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재물 면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③ H동 일대 다른 토지들을 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의 적재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2018. 10. 18. 이전에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이 더 적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 피고가 2006. 11. 28.부터 2011. 1. 19.까지 구 P 잡종지 101,794㎡의 30,543㎡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 30,543㎡가 분할된 토지들에 얼마씩 적치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구P잡종지 101,794㎡에서 순차 분할된 구 AG의 공부상 면적은 10,731㎡이고, 같이 순차 분할된 현 P의 공부상 면적은 10,764㎡임에 반하여, 2018. 10. 18.을 기준으로 구 AG의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340㎡이고, 현 P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 적재물의 면적은 2,948㎡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구 P 잡종지 101,794㎡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의 적재물을 분할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탁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8. 7. 6.부터 2018. 10. 27.까지 구 AG의 340㎡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2018. 10. 18.부터 2019. 8. 11.까지는 구 AG의 340㎡를, 2019. 8. 12.부터 2020. 1. 30.까지는 현 AG 및 현 BD의 340㎡를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원고 신탁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현 P의 2017. 12. 31. ~ 2018. 12. 30.의 ㎡당 연 임료는 6,800원이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임료는 직전연도 연 임료인 6,800원으로 동일하다고 추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구 AG은 구 P에서 현 P과 함께 분할된 토지이고, 현 AG 및 현 BD는 구 AG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위 각 토지가 인접해있고 지목이 동일하므로, 구 AG 및 현 AG, 현 BD의 각 임료도 현 P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신탁에게 구 AG 및 현 AG, 현 BD의 점유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계산하면 2,977,096원이 산출되며, 그 계산식은 [별지1]과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18. 10. 18.부터 2020. 1. 30.까지 구 AG 지상 340m를 점유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산한다). 따라서 원고 신탁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44쪽 14행부터 49쪽 8행까지 및 그 아래 [표4]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2) 구 R 제방 1,284㎡ 및 현 R 제방 770㎡, 현 AJ 제방 257㎡, 현 AK 제방 257㎡: 모두 기각
가) 원고 신탁이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 R,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R, 현 AJ, 현 AK의 각 1/5 지분을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 신탁은 2009. 12. 31.부터 2011. 1. 6.까지 구R중 372㎡, 2011. 1. 7.부터 2022. 8. 28.까지 현 R의 24㎡, 현 AJ의 151㎡, 현 AK의 197㎡에 피고의 적재물이 각 적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법원감정결과에 의하면, 선행 소송의 각 변론종결일 무렵 구 R 제방 1,284㎡ 중 749㎡에 적재물 등이 적치되어 있었고(갑 제1호증 24쪽, 갑 제2호증 31쪽), 현 R 지상 24㎡, 현 AJ 지상 151㎡, 현 AK 지상 197㎡에 각 건축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구 R 및 현 R, 현 AJ, 현 AK의 각 지상에 피고가 적재물을 적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신탁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선행 부당이득반환 판결에서는 피고가 구 R 제방 1,284㎡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표1] 기재 각 토지 중 136,989㎡ 부분에 재활용골재 등 적재물을 적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분할합의에도 구 R 및 현 R, 현 AJ, 현 AK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법원감정결과만으로는 현 R, 현 AJ, 현 AK의 각 지상에 적치된 적재물의 취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

23) 소결

원고 신탁의 피고에 대한 H동 일대 토지의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아래 [표4] 인용금액란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신탁에게 부당이득금의 합계인 756,642,693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287,055,151원에 대하여는 원고 신탁이 구하는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4)

민법이 정한 연 5%, 나머지 469,587,542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구 J	145,997,774	145,997,774
2	구 T	12,000,025	12,000,025
3	구 L	2,829,410	2,818,419
4	현 L	3,975,984	3,478,386
5	현 AC	14,135,942	12,367,069
6	현 AD	25,873,241	24,978,338
7	현 AE	400,220,104	156,341,506
8	구 AE	9,756,837	0
9	구 U	25,873,283	0
10	구 Y	587,271	0
11	현 AH	30,480,495	11,888,120
12	현 AI	210,202,190	81,991,857
13	구 ○ 잡종지 72,166m ²	46,544,057	46,544,057
14	구 ○ 잡종지 21,599m ² 및 현 O	365,655,610	139,893,885
15	구 P 잡종지 101,794m ²	33,769,345	33,769,345
16	구 V	21,947,897	0
17	구 W	13,833,851	0
18	구 P 잡종지 21,495m ² 및 현 P	216,392,174	77,494,439
19	구 AG 및 현 AG, 현 BD	8,699,678	2,977,096
20	현 M	3,041,735	3,041,735
21	현 N	1,060,642	1,060,642
22	구 R	209,453	0
23	현 R	182,536	0
24	현 AJ	1,148,454	0
25	현 AK	1,498,314	0
합계	1,595,916,302	756,642,693	

○ 제1심판결 53쪽 7행 중 "15,020,571원"을 "15,020,565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10행부터

17행까지 및 그 아래 [표5]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소결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H동 일대 토지의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아래 [표5] 인용금액란 기재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부당이득금의 합계인 20,027,3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23. 5. 2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현 J	9,257,945	5,006,782
2	현 T	27,765,495	15,020,565
합계	37,023,440	20,027,347	

마.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적재물 점유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감정 결과와 법원감정결과에서 각 나타나는 피고의 적재물의 위치를 비교, 대조하여 공통되는 부분을 특정하면, 적어도 그 공통부분에 대하여는 선행 소송에서의 감정일부터 제1심 법원감정일까지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공통부분을 특정한 감정서(2024. 10. 23. 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2)를 제출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현 AE 8,818m ²	2012. 3. 29. ~ 2018. 10. 17.	5,513m ²	5,965m ²
2	구 AE 20,742m ²	2011. 1. 7. ~ 2012. 3. 28.	15,509m ²	12,589m ²
3	구 U 29,825m ²	2011. 1. 7. ~ 2012. 4. 22.	26,624m ²	3,620m ²
4	구 Y 11,924m ²	2011. 3. 29. ~ 2012. 4. 22.	9,996m ²	7,237m ²
5	현 AH 523m ²	2012. 3. 29. ~ 2018. 10. 17.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주장 철회)	523m ²
6	현 AI 3,065m ²	2012. 3. 29. ~ 2018. 10. 17.	3,065m ²	3,065m ²
7	구 o 21,599m ²	2011. 1. 7. ~ 2011. 2. 14.	21,599m ²	3,421m ²
8	현 o 19,586m ²	2011. 2. 15. ~ 2018. 10. 17.	5,450m ²	3,421m ²
9	구 V 49,254m ²	2011. 1. 7. ~ 2012. 4. 22.	12,793m ²	2,956m ²

1	현 AE 8,818m ²	2012. 3. 29. ~ 2018. 10. 17.	5,513m ²	5,965m ²
10	구 W 31,045m ²	2011. 1. 7. ~ 2012. 4. 22.	14,931m ²	1,863m ²
11	구 P 21,495m ²	2011. 1. 7. ~ 2018. 7. 5.	2,202m ²	3,288m ²
12	현 P 10,764m ²	2018. 7. 6. ~ 2018. 10. 17.	2,202m ²	2,948m ²
13	구 AG 10,731m ²	2018. 7. 6. ~ 2018. 10. 17.	(위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주장 철회)	340m ²
14	구 R 1,284m ²	2009. 12. 31. ~ 2011. 1. 6.	372m ²	372m ²
15	현 R 770m ²	2011. 1. 7. ~ 2018. 10. 17.	24m ²	24m ²
16	현 AJ 257m ²	2011. 1. 7. ~ 2018. 10. 17.	151m ²	151m ²
17	현 AK 257m ²	2011. 1. 7. ~ 2018. 10. 17.	197m ²	197m ²
18	현 J 35,794m ²	2015. 3. 5. ~ 2018. 10. 17.	22,338m ²	22,338m ²
19	현 T 125,324m ²	2015. 3. 5. ~ 2018. 10. 17.	65,871m ²	72,534m ²

2) 그러나 각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적재물의 면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고, 적재물이 변동되는 양상이 모두 상이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행 소송에서의 감정일과 이 사건 제1심 법원감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5) 을 고려하였을 때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특정한 공통부분에 피고의 적재물이 항상 적치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위 공통부분에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신탁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신탁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신탁 및 피고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중오

판사장현석

판사이주일

별지

- 1) 갑 제3호증의 9, 제9호증의 9
-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V 잡종지 49,254m²에서 2012. 3. 29. 현 AH 잡종지 523m², 구 Z 잡종지 21,060m², 현 AI 잡종지 3,065m²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다.
- 3) H동 일대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 2015. 3. 30.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BE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BE조합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적재물을 적치하여 BE조합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0778)에서도, 피고는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분할합의는 비용분담에 관한 것일 뿐 적치물 존재 자체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이 법원 2020나10181)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2020. 12. 17.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1다205681)하였으나, 2021. 5. 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 한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합의의 내용이나 성격을 위 사건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 4)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당이득금 원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 신탁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등 참조).
- 5)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적재물취거 등 소송에서 감정인 BF의 감정일자는 ① 2008. 7.

18. 및② 2009. 1. 21.인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행 소송에서의 감정일자가 위 ①, ② 중에 어느 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더 늦은 일자인 2009. 1. 2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 법원감정일(2018. 10. 18.)과 약 9년 9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